학점인정심의 규정

제정 2012. 3. 1
개정 2012. 12. 1
개정 2015. 3. 1
개정 2016. 3. 1
개정 2019. 10. 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입학 이전 학습경험에 대한 학점인정을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함이며, 이에 학칙 제28조의 4에 의거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학점인정심의를 위하여 스쿨학점인정심의위원회와 대학학점인정심의위원회로 구성한다.

② 스쿨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스쿨 성적사정위원회 위원이 겸직하며, 대학학점인정심의위원회는 교무담당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으로 스쿨당 교원 1인 이상, 산업체 인사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겸직 위원회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3조(심의대상 및 심의적용범위) ① 학점인정심의대상은 전문학사 학위과정 재학생으로 한다. 단, 정원외 전형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는 학칙 제 28조 4의 ③항을 따른다.

② 학점인정 심의적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제23조에 의해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인정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범위 안에서 이를 우리 대학에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연구소 연구경력, 산업체(프리랜서) 근무경력 등에 한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4의 범위 안에서 이를 우리 대학에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의 범위 안에서 이를 우리 대학에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군 복무 중 취득 학점인정

-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 취득 가능
- 군 복무 중 군 교육훈련시설이나 입영 전 재학 대학이 개설한 원격강좌를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음
- 인정학점은 학기당 6학점 이내, 연 12학점 이내

③ 학점인정 심의인정 시 제 3조 ②항 각 호를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④ 학점인정 심의적용범위는 아래 [표 1. 학점인정 기준표]를 기준으로 하며, 기타 해당되지 않는 세부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⑤ 산업체 근무 경력은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교육부 예규 제31호)에 산업체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에서 근무한 것에 한한다. 학점인정심의에서 산업체 유관등급 [표 2. 산업체 유관기준 인정학점]에 따라 인정학점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⑥ 자격증의 경우, 실습기준에 등급을 부여하여 관련 자격증에 학점을 부여한다.

⑦ 정원 외 입학자의 학점인정은 학칙 제 28조의4(학점 및 교과목이수 인정)에 따라 학점을 부여한다.

⑧ 학점인정심의를 통해 인정된 학점은 “학점”으로 인정하되 “성적”으로 산출하지 않는다.
다만, 유아교육과와 같이 국가에서 정한 교육과정의 운영으로 스쿨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서 동일한 교과목의 이수가 인정되는 경우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표 1. 학점인정 기준표]

신청항목	상세내용	비고
대학 학점인정	별지 1)와 별지 2)의 평가표를 스쿨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서 1차 심의하여 대학학점인정심의위원회로 상정 후 의결(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범위 내에서 인정가능)	● 졸업증명서(미졸업의 경우 제적증명서 또는 수료증) ● 성적증명서
연구소 연구경력 산업체 근무경력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3조 3항의 인정을 준용하며 전공유관 경력에 한함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4범위 내에서 인정가능)	● 연구소 연구경력 증명서 ● 산업체 근무경력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등 산업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
프리랜서 경력	프리랜서 계약서 혹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심의 실시	스쿨별로 관련 직무에서 활동한 프리랜서 증빙서류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학점을 취득한 경우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제32조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인정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범위 내에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학점인정 관련 서류일체 (이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발급서류)

	서 인정가능)	

[표 2. 산업체 유관기준 인정학점]

산업체유관기준	인정학점
유관 1급	100%(30)
유관 2급	80%(24)
유관 3급	60%(18)
유관 4급	0

[표 3. 자격증별 실습기준 및 인정학점]

실습 기준	자격증의 기준	인정학점
상	유관자격증 1급	12
중	유관자격증 2급	9
하	유관자격증 3급	6
기타	무관자격증	일반선택인정여부 별도 검토

제4조(인정 시기 및 절차) ① 학점인정심의는 재학 중 1회에 한해 심의하며, 군복무 중 취득학점에 대해서는 복학 학기 종료 전에 추가 심의할 수 있다. 입학 이후의 학점인정은 대학 규정에 따른다.

② 학점인정의 절차는 학기 초 학생이 제출한 학점인정신청서와 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에 대해 스쿨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서 전공 교육과정과의 관련성을 학점인정평가표에 심의한 후 대학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의결한다.

제5조(회의 및 의결) 위원회의 회의 진행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장 유고 시는 총장이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직을 직무 대행한다.
3.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록) 스쿨학점인정심의위원회 및 대학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회의록 및 회의참석 서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보존한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제8조(업무관리)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후속 업무는 교무담당 부서에서 관장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년도) 이 규정은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